

의성군 고시 제2020 - 125호

##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40-1번지 일원에 「신라본 역사지움(고운사지구) 조성사업」을 위한 군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9.

의 성 군 수

### 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「신라본 역사지움(고운사지구) 조성사업」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## 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) 문화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단촌1	최치원 문학관	문화 시설	단촌면 구계리 140-1번지 일원	84,526	감) 187	84,339	의성군고시 제2013-33호 (2013.4.25)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단촌1	최치원 문학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화시설 면적 변경 - A = 84,526㎡ → 84,339㎡ 감) 187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적분할에 따른 군계획 시설(문화시설) 면적 변경</li> </ul>

## 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: 붙임과 같음(도면계재 생략)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
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4.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(054-830-6344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 
보시기 바랍니다.